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체포특권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등〉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35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따른 체포동의안의 가결 간주	3
2. 의원의 회의 무단 불출석시 수당 등 감액	7
3. 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중지	11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 · 박충권 · 김소희 · 김석기 · 유상범 · 고동진
김 건 · 박준태 · 김상훈 · 구자근 · 김선교 · 김예지
김형동 · 윤영석 · 서천호 · 최은석 · 박정하 · 최보윤
최수진 · 조정훈 · 엄태영 · 정연욱 · 백종현 · 이준석
임종득 · 권영진 · 최형두 · 한기호 · 김장겸 · 박성민
김상욱 · 유용원 · 김대식 · 서범수 의원 (34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 의안번호 : 163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임.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에게 서약하는 등 특권 내려 놓기에 동참한 바 있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화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따른 체포동의안의 가결 간주(제2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한민국헌법」 제44조¹⁾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기 중 의원의 의정활동과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²⁾

1)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121

헌행법상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면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³⁾

개정안은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등의 불필요한 오해와 정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즉,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임과 동시에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거나⁴⁾,

국회의원 개인의 신체의 자유보다는 국회의 집회·토론·심의를 위한 성원이 우선적인 보호법익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⁵⁾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2024), p.448

5) 김선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3호(2004. 9.), 2004, p.41

둘째, 현행법상 특정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만으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제130조제2항6) 및 해임건의안(제112조 제7항7)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당 안건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정한 기한 내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결’을 간주하는 규정은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특정 의사표시만으로 ‘가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셋째, 개정안과 같은 ‘가결 간주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헌법 제44조제1항8)에서는 회기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의 요건으로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동의로 불체포 특권을 그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배제하려는 의도이므로, 국회의 구체적 의사 확정이 없음에도 이를 국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명시적 의도에 반한다는 의견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6)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7)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8)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9)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3호(2004. 9.), 2004, p.39

10) 참고로, 2016년에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방안으로서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본회의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을 경과할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현행 헌법상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행법과 같이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정리된 바 있음.

넷째,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37호)」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병합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2] 체포동의안 가결 간주규정 관련 개정안 비교

구 분	개정안	최수진의원안(제1337호)
가결 간주규정 신설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시	처리시한(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 도과 시 ¹¹⁾

11)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이나, 최수진의원안은 처리시한을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음.

2. 의원의 회의 무단 불출석시 수당 등 감액 (안 제32조제2항)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생략)	제32조(청가 및 결석, 수당 등 지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특별활동비</u> 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 ----- ----- ----- <u>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u> - -----.
<신 설>	③ ~ ④ (생략)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수당 등의 감액과 환수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있음¹²⁾.

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

[표-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등

구 분	근거조항	지급목적	지급성격	비고
수당*	제7조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	급여 (매월지급)	*회의 무단 불출석시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특별활동비 감액
입법활동비	제11조	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급	지원 경비 (매월지급)	*국회법 §163조①에 따라 30일 이내의 출 석정지 시 출석정지 기간동안 수당·입법 활동비·특별활동비 1/2감액 ¹³⁾
특별활동비	제12조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경비 (청구에 의하여 지급 등)	*정액지급경비는 출석 또는 정계여부 와 관계없이 지급
여비	제14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로 여행 시 지급		

* 기존의 세비(歲費)라는 용어는 「(구)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세비 대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

참고로,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이고, 입법활동비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는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 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함.

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13) 국회법 제163조제2항은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방해)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외 경우에는 수당등의 1/2을 2개월 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등을 3개월간 미지급하도록 정함.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국회 불출석 또는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등의 경우에 대한 수당 등의 감액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제32조제2항)¹⁴⁾, 결석 시 특별활동비 감액의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에 대하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본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한편, 징계로 의원의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제163조제1항제3호)¹⁵⁾.

개정안은 의원의 무단 불출석 시 감액되는 금전의 범위를 현행의 “특별활동비”에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로 확대하여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

14)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024년도 기준, 불출석 회의 1일당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감액 지급하고 있음.

15)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원의 국회 불출석 시 현행의 특별활동비에 추가하여 수당, 입법활동비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6.10.,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0)¹⁶⁾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시 수당등 감액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 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¹⁷⁾ 중 어느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동 개정안은 “부칙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법」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의 수당 등 감액 관련 기준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중지 (안 제32조제3항·제4항)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되 무죄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5]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 ② (생략)	제32조(청가 및 결석, 수당 등 지급 제한) ① ~ ② (생략)
<신 설>	③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신 설>	④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 등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수당 등의 감액과 환수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현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등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수 등의 지급이 중지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¹⁸⁾을 지급하지 않되,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¹⁹⁾.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²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봉월액의 40%를

18)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19)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을 「각 시·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며,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당 기간 중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²¹⁾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50%(연봉제 공무원은 40%)를,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연봉제 공무원은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²²⁾

20)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결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2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2)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표-6] 보수 등 지급정지 현황 비교

구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급여성 경비	월정수당	연봉월액,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봉급(연봉월액),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원경비	의정활동비, 여비	-		-	
지급정지 사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지급정지 항목	<u>-월정수당 미지급 (12개 시·도의회)</u> <u>-의정활동비 미지급 (17개 시·도의회)</u> -여비 미지급 (10개 시·도의회)	최초 3개월	-연봉월액 60% 감액 -가족수당 50% 감액 -정액급식비 및 직 급 보 조 비 미지급	최초 3개월	-봉급 50%(연봉월액 60%) 감액 -가족수당 50% 감액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 월당 1/6감액 -정액급식비, 직급보 조비,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 무수당, 연가보상비 미지급
		3개월 경과 후	-연봉월액 80% 감액 -가족수당 70% 감액 -정액급식비 및 직 급 보 조 비 미지급	3개월 경과 후	-봉급 70%(연봉월액 80%) 감액 -가족수당 70% 감 액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월당 1/6 감액 -정액급식비, 직급보 조비,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 무수당, 연가보상비 미지급
무죄 확정시 소급지급 항목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연봉월액		보수전액 ※ 단,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소급 제외	

자료: 국회사무처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중지의 적정성에 관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나 국가·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 봉급을 감액하는 것은 해당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른 것인데, 국회의원은 구속 중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17개 시·도 의회 전체가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 중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고, 이 중 12개 시·도 의회의 경우는 급여성 경비인 월정수당의 지급까지도 중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22.12)²³⁾에 따라 최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유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3)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제2022-959호, 2022년 12월 19일 의결)을 통해 각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둘째, 국회의원 수당등 지급 중지 사유의 적정성에 관한 것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 등이 미지급 또는 감액되는 경우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로 한정되어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로 규정하게 되면 공소 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등의 지급이 제한되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당등 지급 중지와의 형평성, 최소침해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당등의 지급 중지 사유를 합목적적인 범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유사 취지의 법률안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시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무죄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서천호의원안·최수진의원안·한정애의원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 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²⁴⁾ 중 어느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7] 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중지 관련 법률안 발의현황

구 분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안 (2201122)	최수진의원안 (2201346)	한정애의원안 (2202271)
지급중지 사유	구 속	구 속	구 속	공소 제기 후 구금
지급중지 기간	(불명확) ²⁵⁾	구속기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기간		
지급중지 수당등의 종류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중지된 수당등의 소급지급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적 용 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구금된 경우부터 적용			

문 의 처

02)6788-5014, 5016

25)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략)...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중략)...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고 하여 법제적인 측면에서 수당등의 지급제한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제 출

-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국§26①)

본회의 보고

-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국§26②)

본회의 심의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상정
- 정부의 체포이유 설명(법무부장관)
- 질의·답변
- 신상발언(신청시)

의 결

- 무기명투표(국112§⑤)
-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체포동의가 있을 경우 일괄상정은 가능하나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되, 그 기간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국§26②)

정부에 통지

참고 2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 지난 제16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정부는 총 44건의 체포동의 요청을 하였으며, 이 중 10건 가결, 16건 부결, 4건 철회, 8건 폐기, 6건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입법기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제16대 ~ 제21대국회 입법기별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가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 폐기	합계
제16대국회 (2000-2004)	-	7	2	6	-	15
제17대국회 (2004-2008)	-	1	-	-	-	1
제18대국회 (2008-2012)	1	-	-	2	-	3
제19대국회 (2012-2016)	4	2	2	-	3	11
제20대국회 (2016-2020)	-	2	-	-	3	5
제21대국회 (2020-2024)	5	4	-	-	-	9
합 계	10	16	4	8	6	44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